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7
----------	-----

2023. 9. 19.(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9월 7일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회복,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임시거처와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이 주요 내용임.

□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현황

기준 : '21~'22년말

구 분	가구수	인 원	담당부서	비 고
합 계	189,043	366,157		
기초생활수급자	58,468	78,709	복지정책과	
차상위수급자	21,998	32,335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	97,966	장애인복지과	
홀로사는 노인	102,310	102,310	노인복지과	
한부모 가정	6,267	16,117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다문화 가정	-	38,720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현재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 중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전자금(119천사기금)은 소방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된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15명에게 지원하였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수반되는 예산은 연 735만원 가량으로 가구당 7만원씩 최대 7일간 추계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주민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종류,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8. 29.~'23. 9.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23년 9월 기준 11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옥천, 단양, 제천군에서 시행 중임.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임시거처와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7
----------	-----

발의 연월일 : 2023년 8월 24일
발의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회복,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3.8.29.~2023.9.4.(의회홈페이지)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피해주민”이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생략>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도민의 임시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
(비용추계 세부내역 참고)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 ~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다. 추계결과 : 36,750천원

- 임시거처 지원 : 36,750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불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 입						
세 출	7,350	7,350	7,350	7,350	7,350	36,750
임시거처 지원	7,350	7,350	7,350	7,350	7,350	36,750
재원조달	7,350	7,350	7,350	7,350	7,350	36,750
자체 수입	소계	7,350	7,350	7,350	7,350	36,750
	지방세	7,350	7,350	7,350	7,350	36,750